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「건축법」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특별회계의 설치, 관리・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3조)
나.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다.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라. 특별회계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마. 특별회계 예비비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바. 특별회계 준용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사.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아.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건축법」,「성주군 건축조례」,「지방재정법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320(2022.1.17.)호]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2745(2022.1.17.)호]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[예고기간 2022. 1. 17. ~ 2. 6.]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「건축법」에 근거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○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·관리·운용과 세입·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건축물의 전문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